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흠제 의원 외 23명

나. 의안번호 : 제1597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2. 5.

라. 회부일자 : 2024. 2. 7.

2. 제안사유

-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장의 음주측정 장비가 매우 부족하고 운전자의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
- 교통약자의 이동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의 음주측정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행업무 전 운전자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의 음주측정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행업무 전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화를 규정함(안 제14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4조·제16조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 제14조의2 등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4. 2. 14. ~ 2024. 2. 18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택시정책과)¹⁾ : 수정가결

- 조례 개정안 제14조 제3항은 “특별교통수단 운영자는 매 운행 전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” 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

1) 제322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(서울시 택시정책과-6957호, 2024.2.22.)

- 차량운행 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함. 다만, 기술발전(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등)과 타 법령 개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
- 전산시스템 구축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가 많고, 시차제 근무를 하는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음주 운행 방지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려움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자가 음주 측정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전자의 운행 업무 전 음주 측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의 음주 측정 전산시스템 설치와 근무 투입 전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2)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운영

2)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
- 제2조(정의) 8. “특별교통수단”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.
- 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
 -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.
 -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,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·광역시·도 등으로 하며,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방법 등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

- 서울시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이용 대상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, 현행 조례 제14조제2항3)에서 시장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음주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의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
-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‘장애인 콜택시 차고지 42개소 중 음주측정기는 단 4개소에만 구비되어 있어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의 음주 측정 및 기록관리에 실효성이 없다’고 지적⁴⁾한 바 있고, 이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해당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차고지별로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추가 도입하고 음주 여부를 상시 점검⁵⁾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
3) 「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4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

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,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및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.

4) 202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(서울시설공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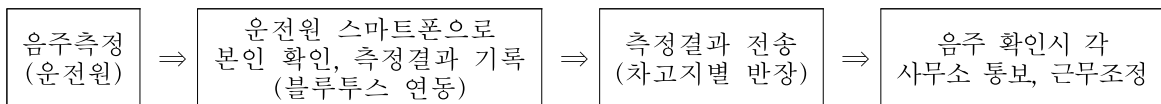
- 장애인 콜택시 총 42개 차고지 중 4개 차고지에 음주측정기 4대만 구비,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음주측정 현실화 필요 (성흠제 의원)

5) 운행 전 음주측정 일상화를 통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(2024. 1. 서울시설공단)

- 음주측정 실시: 운행 전 자가점검 실시(42개 전 차고지 음주측정기 운영 예정)

- 음주측정기 구비 개선 방안: (기존) 설치형 음주측정기 4대 구비(4개 차고지) ⇒ (개선) 휴대용 음주측정기 41대 구매 후 미설치 차고지에 배부

- 운영방안 [※ 측정주기: 매일(각 운전원 운행 전 음주측정 실시)]



- 음주 적발 시: 해당 운전원 차량운행 제한(개인휴무 등 사용)

○ 한편 서울시 대중교통인 버스, 지하철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6)과 「철도안전법」 7) 등에 따라 각 운송수단별 운송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조례8)를 통해 대중교통 운영자가 운전자의 운행 전 음주 측정 및 음주 측정 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운전자 음주 측정, 기록관리를 시행토록 하고 있음

○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는 대중교통 수단9)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

6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1조(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) ①~⑪ 생략

⑫ **운송사업자**(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)는 **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.**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12조의4(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)

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2항 전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을 갖춘 호흡측정기를 사용하여 확인해야 한다.

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**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의 성명, 측정일시 및 측정결과를 변조가 불가능한 형태의 전자적 파일이나 서면으로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·관리**해야 한다.

7) 「철도안전법」 제41조(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) ① 생략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**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.**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8)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」 제5조(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) ①~③ 생략

④ **대중교통운영자는 운전원 근무 투입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음주 측정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**

9)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」 제2조(정의) 1. 생략

2. **"대중교통수단"**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.

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(路線)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(이하 "노선버스"라 한다)

나. 「도시철도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교통수단

다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

운전자의 운행 전 음주 측정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,

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의 음주 측정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행 업무 전 운전자의 음주 측정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

- 한편,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‘차량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의 전산시스템 구축은 ‘장애인콜택시 여건상 차고지가 많고 시차제 근무 등에 따른 여건을 고려할 때 음주 운행 방지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’는 의견¹⁰⁾을 제출하였으나,

시스템을 통한 음주 측정 데이터를 기록·관리하는 것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운행의 신뢰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통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

10) 주석 1 참조